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5-01-28 조례 제3117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3395호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3923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40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3, 2015. 10. 12)

제2조(사업 및 평가)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타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에 관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의 출판·배포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4. 12. 26)

②연구원의 목적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이사의 추천)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여성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

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 12. 26)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1. 자치단체의 출연금
- 2.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의 출연금
- 3. 기타 운영 수익금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 설치) ①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북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 10. 12)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은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 그 밖의 출연금, 결산 잉여금 등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 12. 26)

- 1. 자치단체의 출연금
- 2.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의 출연금
- 3. 기타 운영 수익금

③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 12. 26)

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26)

⑤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2. 26)

제5조(운영경비) ①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및 보조금과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

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연구·조사의 위탁) ① 자치단체는 연구원에 연구·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4. 12. 26)

② 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2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 12. 26)

제7조(자료 등의 제공) ① 원장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연구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6)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신설 2014. 12. 26)

제9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연구원의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신설 2014.12.26)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재)전북연구원과 (재)여성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6 조례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2 조례4064)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